

# 대 구 지 방 법 원

## 제 1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11나23666 자동차인도  
원고, 피항소인 A (8\*\*\*\*\*-1\*\*\*\*\*)  
대구 달성군 \*\*읍 --리  
피고, 항소인 B (8\*\*\*\*\*-1\*\*\*\*\*)  
전주시 덕진구 \*\*동 \*\*아파트  
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. 9. 29. 선고 2010가단27551 판결  
변 론 종 결 2012. 3. 21.  
판 결 선 고 2012. 4. 6.

### 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자동차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1/5은 원고가,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, 932,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. 8. 31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(이하, '이 사건 차량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원고는 2010. 2. 11. 소외 조\*\*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데, 조\*\*가 원고의 의사대로 매매하지 않은 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조\*\*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조\*\*는 이와 같은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.

다. 피고는 소외 서\*\*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.

라.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별지 과태료 목록 기재와 같이 속도위반 및 주정차위반으로 함께 932,12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4 내지 7호증, 을 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고, ②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불법 점유하면서 운행하는 동안 부과받은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### 3. 판단

#### 가. 자동차인도청구에 관한 판단

물건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(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)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여 운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, 피고가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,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인도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나.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

1)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32,1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1. 8.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서\*\*에게 1,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는데, 당시 서\*\*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, 매매계약서, 차량포기각서,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그가 원고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, 원고에게도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지만, 서\*\*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거나 적어도 원고로부터 어떠한 기본대리권

을 수여받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932,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. 8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,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자동차인도 청구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|     |    |     |
|-----|----|-----|
| 재판장 | 판사 | 이영화 |
|     | 판사 | 서범준 |
|     | 판사 | 김수연 |

별지

## 목 록

1. 자동차등록번호 : 4\*로\*\*\*\*
1. 차명 : QM5
1. 차종 : 승용
1. 용도 : 자가용
1. 차대번호 : -----
1. 원동기형식 : M9R
1. 연식 : 2008
1. 소유자 : A외1인(이\*\*)
1. 사용본거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\*\*번지 \*\*호\*\*\*\*
1. 최초등록일 : 2008-01-28. 끝.

### 과태료 목록

| 순번 | 위반일시         | 위반내용   | 과태료 금액(원)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1  | 2010. 3. 11. | 주정차위반  | 42,000    |
| 2  | 2010. 7. 15. | 주정차위반  | 40,000    |
| 3  | 2010. 7. 19. | 속도위반   | 40,000    |
| 4  | 2010. 7. 21. | 주정차위반  | 40,000    |
| 5  | 2010. 8. 5.  | 주정차위반  | 32,000    |
| 6  | 2010. 8. 16. | 주정차위반  | 32,000    |
| 7  | 2010. 8. 21. | 속도위반   | 40,000    |
| 8  | 2010. 9. 19. | 속도위반   | 40,000    |
| 9  | 2010. 9. 28. | 주정차위반  | 40,000    |
| 10 | 2010. 2. 13. | 속도위반   | 85,260    |
| 11 | 2010. 3. 3.  | 속도위반   | 47,760    |
| 12 | 2010. 5. 17. | 속도위반   | 47,280    |
| 13 | 2010. 5. 17. | 속도위반   | 47,280    |
| 14 | 2010. 6. 2.  | 속도위반   | 46,800    |
| 15 | 2010. 6. 3.  | 속도위반   | 46,800    |
| 16 | 2010. 10. 6. | 신호지시위반 | 78,540    |
| 17 | 2010. 11. 6. | 속도위반   | 44,400    |
| 18 | 2010. 6. 7.  | 속도위반   | 70,000    |
| 19 | 2010. 11. 9. | 주정차위반  | 32,000    |
| 20 | 2010. 7. 27. | 속도위반   | 40,000    |
| 합계 |              |        | 932,120   |